

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4. 4. 22.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30.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
(2004. 5. 12)에 상정의결

2. 제 안 설 명 요 지 (제안설명 :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김 은 석)

가. 제 안 이 유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신설되어 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내 용

- 아리랑문학관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”으로 함 (안 제11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4. 1. 9일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행정기구가 신설되어, 아리랑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아리랑문학관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벽골제아리랑 문학관사업소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,

○ 검토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특이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

○ 특이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

○ 표결결과, 재적위원 9명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,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